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사·석사 연계과정 운영 지침

제정 2012. 7. 5.

개정 2020. 8. 6.

개정 2025. 7. 18.

제 1 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학사·대학원 연계과정 운영 규정’에 따라 행정대학원 학사·석사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설치 및 운영) 행정대학원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사범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첨단융합학부 학사과정 학생을 위한 연계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 3 조 (수업연한) 학사·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 이상으로 하며,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1. 학사학위과정 : 6개월(1개 학기)
2. 석사학위과정 : 6개월(1개 학기)

제 4 조 (지원 자격 및 절차)

① 연계과정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학과(부)에 소속되거나, 해당 학과(부)의 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 중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54학점 이상 취득
2.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성적 평점평균 3.3 이상 또는 직전 2개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 3.5 이상 취득
3. 지도교수 및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

② 연계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행정대학원에서 정한 소정의 지원서와 지원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선발인원) 연계과정 선발인원은 석사과정 입학정원의 40% 범위 이내에서 선발하되 구체적인 선발인원은 제2조의 단과대학 간 협약에 따라 행정대학원장(이하 “대학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 6 조 (선발시기 및 선발방법) ① 연계과정 이수 예정자(이하 “연계과정 학생”이라 한다)는 매 학기 1회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일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형방법은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재학 중 성적, 추천서, 연구활동계획서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③ 대학원장은 매학기 말까지 연계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 ①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재학 시 매학기 수강신청을 최대 24학점까지 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에서 대학원 과정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행정대학원 전공 교과목을 12학점 이내에서 이수할 수 있다.

제 8 조 (연계과정 운영 등) ① 대학원장은 연계과정 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초에 대학원 과정의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② 연계과정 학생은 매학기 연구활동계획서를 대학원 과정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행정대학원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계과정 학생으로서 연계과정을 운영하는 학사과정의 학과(부)에 소속된 학생은 타 학과(부)로 전과를 할 수 없으며, 해당 학과(부)의 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전공의 이수를 포기할 수 없다.

④ 연계과정 학생은 선발된 연계과정의 대학원 과정의 학과를 변경할 수 없다.

⑤ 대학원장은 연계과정 학생을 위한 학사석사 공통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⑥ 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과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석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⑦ 연계과정 학생으로 석사과정에서 3개 학기 이상 등록 및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 9 조 (과정탈락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연계과정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이하 “포기자”라 한다)는 매 학기 말까지 포기원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계과정 탈락자 및 포기자(대학원 입학 포기자 포함)는 학칙 제88조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제 10 조 (학사과정 졸업 자격 및 대학원 입학) ① 연계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졸업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개 학기 이내에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고,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3.3 이상 취득

2. 해당 학기에 대학원 등록

3. 연구활동계획서 1회 이상 제출

② 제1항의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매학기 정하여진 기간 내에 소속 학과(부)에 졸업신청서와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제출하고, 행정대학원장에는 졸업신청서 사본과 대학원 입학지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계과정 학생은 학사과정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계과정 학생에 대한 특례)

① 연계과정은 운영하는 학사과정의 졸업논문(또는 이와 동등한 실적심사 등)을 학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② 연계과정의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시험을 면제(무시험 특별전형)한다.

③ 연계과정의 대학원 석사과정 입학 시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④ 학사과정 재학 중 행정대학원의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12 조 (세부사항)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2025. 7.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